

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7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박기재, 권수정, 김경영,  
김경우, 김소영, 김제리,  
김호진, 김화숙, 문병훈,  
오한아, 이영실, 조상호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동물보호법」 개정사항에 따른 수정사항 등을 반영해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 일부를 정비함.
- 나. 현재 사업내용을 반영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기동물의 입양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함. (안 제15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(첨부)

#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의2 중 “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”을 “내버려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맹견”이란”을 ““맹견”이란 사람의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따라 등록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또는 인식표”를 “를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3. 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의료비

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,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.

제24조제1항 중 “구조·보호·분양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”을 “구조·보호와 입양, 동물학대 방지, 동물등록, 반려동물의 교육·홍보 등 동물보호·복지 시책”으로, “영업자”를 “영업자,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”로 한다.

제24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제24조 같은 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시장”을 “시장 또는 구청장”으로, “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”를 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시장”을 “시장 또는 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1의2. “유실·유기동물(이하 “유기동물”이라 한다)”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·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<u>중이 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</u> 동물을 말한다.</p> <p>2. “등록대상동물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·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(月齡)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.</p> <p>2의2 <u>“맹견”이란</u>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.</p> <p>3. ~ 9. (생략)</p> <p>제6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) ①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의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내버</u> <u>려진</u> ----- -----.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-- <u>“맹견”이란 사람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<u>따라</u>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 전자개체식별장치(이하 “무선 식별장치”라 한다) <u>또는 인식표를</u>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,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15조(유기동물의 입양) ① 시장은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<u>단, 유기동물의 입양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유기동물의 입양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·2. (생략)</p> <p>3. <u>1년분에 해당하는 동물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</u></p>	<p>1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의료비</u></p>
<p>② (생략)</p> <p>제17조(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) ① (생략)</p> <p>② <u>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</u>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조치를 하되,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,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24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)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<u>구조·보호·분양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</u>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과 동물보호센터,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<u>영업자</u>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<u>구조·보호·분양 및 동물 복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</u> 유기동물의 <u>구조·보호·분양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</u></p>	<p><u>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,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) ① ----- 구조·보호와 입양, 동물학대 방지, 동물등록, 반려동물의 교육·홍보 등 동물보호·복지 시책-----</p> <p>-- <u>영업자,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</u> -----.</p> <p>&lt;삭제&gt;</p>

현행	개정안
<p><u>교육·홍보·지원·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시장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,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26조(반려견 놀이터 설치·운영 등) ① <u>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를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제2항제11호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</u></p>	<p>② <u>시장 또는 구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</u> ----- -----.</p> <p>제26조(반려견 놀이터 설치·운영 등) ① <u>시장 또는 구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「<u>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③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